안산대학교	강의평가규정	규정번호	3-4-4
		제정일자	2017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, 합리적인 교원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) 강의평가는 당해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,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3조(평가시기 및 방법) ① 강의평가는 평가시행을 공지한 후,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며,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기 중 강의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강의평가는 성적열람 전에 실시하며,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한다.

③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공지하며, 강의평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.

제4조(평가유형 및 항목) 강의평가는 선다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며 평가 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 다만, 강의중간평가의 문항 유형 및 항목은 자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점수 산정 및 평가결과) ① 평가점수는 해당교수가 담당한 전교과목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되 5.00 만점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② 강의평가 응답인원수가 수강인원의 70%미만인 경우 학과별, 직급별 평균에서 제외한다.

③ 항목, 대상인원, 응답인원, 배점, 평균점수, 표준편차 순으로 평가 결과물을 출력한다.

제6조(평가결과 확인)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는 총장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없으며, 강의평가 결과가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정기간이 완료된 이후 담당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(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) ① 강의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, 교원 재임용 및 승진평가 시에 반영하되,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강의평가 제외 과목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.

②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.

③ 강의평가 결과 3.8점 미만인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강의역량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법 또는 관련 연수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

제8조(평가결과 보고 및 비밀 유지) ① 교무입학처는 매학기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② 학과(부)장은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결과를 교무입학처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.

③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관계자 이외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인사규정, 교원업적평가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